

# 독일의 소규모 미니고용의 발전 동향 및 최근 논의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박사과정 (경제학))

## ■ 머리말

지난 수년 동안 독일 내에서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 및 시간제 고용 등과 같은 소위 ‘비전형 근로관계(atypisch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고용 중에서도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자(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te, 이하에서 미니고용자라 함)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해 왔다. 2011년 최신 소규모 미니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현황에 나타난 6월 말 독일 제조생산부문의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6,941,112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41,129,000명) 중에서 약 17% 가량이 미니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sup>1)</sup> 미니고용자들의 경우 법적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미니고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일괄 보험료 형식으로 미니잡 중앙센터<sup>2)</sup>에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측면에서도 미니고용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단지 2%의 근로소득세만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일반 임금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미니고용의 장점들은 독일 내 미니고용의 확대에

1)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 5.

2) 미니잡 중앙센터(Minijob-Zentrale, [www.minijob-zentrale.de](http://www.minijob-zentrale.de))는 독일 광부·철도원·선원 연금보험공단 산하로 설치된 소규모 미니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소규모 미니고용의 법제도적 발전 과정과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근 문제 제기 및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소규모 미니고용의 법제도적 발전 과정

### 소규모 미니고용의 발전 과정 및 개념

2003년 4월 1일에 소위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법(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의 일환인 하르츠II 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소규모 미니고용과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소규모 미니고용 관련 법개정의 기본 목적은 저임금 부문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을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및 세금 혜택을 통해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장기실업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sup>3)</sup> 이에 따라 기존에 소규모 미니고용의 판단 기준이었던 월평균 근로소득이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상승하였으며, 미니고용자의 경우 임금의 사소성 및 근로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되었다.<sup>4)</sup> 한편, 미니고용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미니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28%(제조생산부문) 또는 10%(민간가계부문)에 해당하는 일괄 사회보험료와 2%의 일괄세금을 미니잡 중앙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주업 외에도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을 부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 주업에서의 소득과 저임금 미니고용에서의 소득이 별개로 계상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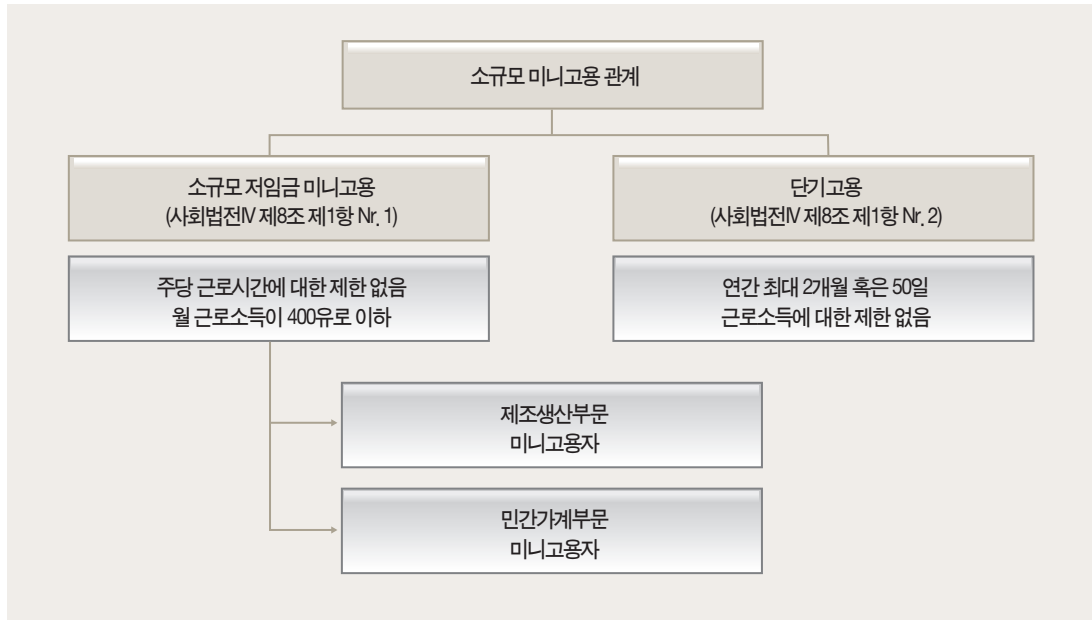
소규모 미니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또는 Mini-job)이란 독일 사회법전(SGB)IV 제 8조 규정에 따라 크게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과 연간 근로일수가 2개월 혹은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고용(kurzfristige Beschäftigung)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sup>5)</sup>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3) Steiner/Wrohlich, Minijob-Reform, DIW-Wochenbericht, 8/2005, p. 141.

4)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2005, p. 1.

5)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p. 19~20.

[그림 1] 소규모 미니고용의 분류 및 성립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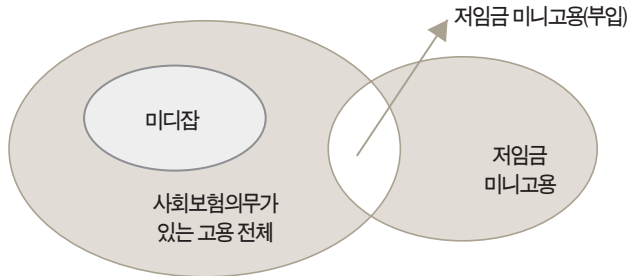
자료: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p. 21.

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생산부문의 저임금 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m gewerblichen Bereich)과 민간가계부문의 저임금 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n Privathaushalt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임금 미니고용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정기적인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 이하여야만 하며, 단기고용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일수가 연간 2개월 혹은 5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의 매월 근로소득이 300유로이고 12월에 근로계약상으로 보장된 크리스마스 보너스 150유로가 지급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자 갑의 연간 근로소득 총계는 총 3,750유로(300유로×12개월 + 150유로)가 된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갑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12.50유로가 되며, 이는 법적 미니고용의 기준급여액인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고용으로 인정되어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 다른 예로, 근로자 갑의 매월 근로소득이 300유로인데, 근로자 갑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휴가를 간 다른 근로자의 근무를 대체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두 달 동안의 대체복무를 통한 갑

[그림 2] 소규모 미니고용의 형태와 상호관계



의 6월과 7월의 급여가 각각 600유로인 경우 갑의 연간 근로소득은 4,200유로 (300유로×10개월+600유로×2개월)가 된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갑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50유로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니고용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근로자 갑이 실시한 두 달 동안의 대체복무는 바로 앞에서 구분한 소규모 미니고용 중 단기고용에 해당된다. 단기고용의 개념상 급여는 400유로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전체 근로기간이 두 달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합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근로자는 다수의 사용자들과 복수의 미니고용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한 명의 사용자와 다수의 미니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하나의 정규직 일자리를 여러 개의 미니고용으로 나누어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회보험료 및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복수의 미니고용 관계로 근로자 갑이 사용자 A와 미니고용 계약을 통해 매월 200유로 그리고 사용자 B와 미니고용 계약을 통해 매월 350유로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이 경우 근로자 갑이 두 개의 미니고용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50유로 [(2,400유로+4,200유로)÷12]로 400유로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갑의 고용은 미니고용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 갑은 각각의 미니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미니고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미니고용의 법적 기준인 400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sup>6)</sup>

6) 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2010.

이처럼 400유로를 초과하는 고용의 경우 소위 '미디잡(Midijob)'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임금 고용관계에 놓이게 된다. 미디잡이란 하르츠II 법 개정안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근로관계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01~800유로인 경계구간(Gleitzone)에 놓여 있는 고용관계를 일컫는다(사회법전IV 제20조 제2항). 따라서 미디고용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는 저임금 미니고용 관계가 아니며, 통상적인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가 된다.<sup>7)</sup>

마지막으로, 민간가계부문의 저임금 미니고용이란, 근로자가 주로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리, 세탁 및 청소, 육아, 간병 및 정원 관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 이하인 근로관계를 일컫는다.<sup>8)</sup> 독일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민간가계부문에서의 미니고용의 확대는 최근 독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전과 달리 핵가족화가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가족을 꾸리지 않고 싱글로 사는 사람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갖고 늦은 시각까지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에 투자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층이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한 가사서비스 - 예를 들어, 시장보기, 청소 및 세탁, 요리 등 - 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미니고용을 통해 가사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가계부문에서의 미니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보험법적인 측면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자를 위해 사용자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위한 일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니고용자 자신은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니고용은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sozialversicherungsfrei) 근로관계라고도 불리어진다.<sup>9)</sup>

7)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4.

8)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p. 6~7.

9)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6.

〈표 1〉 미니고용자를 위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

(단위 : %)

	제조생산부문 미니고용자	민간가계부문 미니고용자
의료보험을 위한 일괄 사회보험료	13	5
연금보험을 위한 일괄 사회보험료	15	5
전 체	28	10

자료: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 16.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재정긴축법(Haushaltsbegleitgesetz)에 따라 제조생산부문에서 사용자가 미니고용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일괄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기존의 23%(연금보험 12%, 의료보험 11%)에서 28%(연금보험료 15%, 의료보험료 13%)로 인상되었다. 또한 민간가계 부문에서 사용자가 미니고용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일괄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연금보험 5%, 의료보험 5%)로 설정되었다.<sup>10)</sup> 따라서 민간가계부문의 사용자는 제조생산부문에 비해 미니고용자 고용에 따른 일괄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sup>11)</sup>

한편, 국민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만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당초 미니고용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면제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면제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즉 근로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고용관계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연금보험료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9.9%이다. 미니고용자는 이 19.9% 중에서 사용자가 자신을 위해 부담하는 15%(제조생산부문) 혹은 5%(민간가계부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4.9% 또는 14.9%)을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연금보험법상의 모든 청구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위 미니고용자의 ‘연금보험료 축적(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이라고 한다.<sup>12)</sup> 이를 통해 미니고용자는 자신의 급여 전체를 연금 산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10)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2005, p. 2.

11)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2011, p. 8.

12) Minijob-Zentrale, 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 2010;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2.

라, 미니고용을 실시한 근로기간 전체가 연금보험 관련 기간 산정에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법정 연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의 대기기간(Wartezeit)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가 이미 예전의 정규직 고용관계에서 3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축적(Aufstockung)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가 최소 2년 동안 미니고용 관계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관계와 마찬가지로 연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미니고용자는 낮은 연금보험료율을 본인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 의무 고용자와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법상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니고용자가 이러한 연금 축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에게 연금보험 면제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금보험 축적은 통지된 바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행한 미니고용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미니고용자에게 이러한 연금 축적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니고용자를 위한 전체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소 기준 급여액은 155유로이다. 즉 미니고용자의 월 급여액이 100유로인 경우에도 155유로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제조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미니고용자가 월 100유로의 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100유로의 15%인 15유로를 연금보험을 위해 납부한다. 원래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연금보험료율은 19.9%이기 때문에 155유로의 19.9%인 30.85유로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 축적을 사용하는 미니고용자는 이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15유로를 차감한 금액인 15.85유로만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 근로소득세법적인 측면

원칙적으로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자를 위해 사용자는 일괄 사회보험료 이외에도 근로소득세(Lohnsteuer)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니고용자를 위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개인이 근로소득세 카드(Lohnsteuerkarte)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산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Einkommenssteuergesetz: EStG) 제40a조 규정에 따라 일괄 소득세율

(2%)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미니고용자가 근로소득세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니고용자 월 급여액의 2%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일괄 사회보험료와 함께 미니잡 중앙센터에 납부해야 한다.<sup>13)</sup>

예를 들어,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갑의 월 급여가 400유로이며, 그 밖의 다른 고용은 행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때 근로자 갑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고용 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니고용자인 갑을 위해 급여액의 15%를 연금보험료로, 13%를 의료보험료로 그리고 2%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 갑에게는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netto) 400유로의 근로수익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이 A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통해 월 350유로 그리고 B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통해 월 150유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 근로소득은 500유로로 400유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근로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15%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료율인 19.9%를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15%의 일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금소득세법 제40a조 제2a항의 규정에 따라 2%가 아닌 20%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된다.<sup>14)</sup>

## 노동법적인 측면

사회보험법이나 근로소득세법적인 측면에서 저임금 미니고용자에 관한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저임금 미니고용과 일반적 고용관계에 차별을 두어 적용하는 규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니고용자의 경우도 노동법상으로 여타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시간제 및 전일제 고용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

13)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p. 115~116.

14)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118.



며, 미니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균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간제고용법 (Teilzeitbeschäftigungsgesetz: TzBfG)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회법전IV 제8조 제1항 Nr. 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미니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노동법상의 청구권을 갖는다.<sup>15)</sup>

- 동등 처우에 관한 청구권
- 질병 및 법정 휴일에 따른 임금계속지급 청구권 (Entgeltfortzahlung)
- 산모보호법에 따른 고용금지 기간 동안의 산모보호임금 및 산모보호보조금 청구권
- 유급 연차휴가 (bezahlte Erholungsurlaub)
- 법정 해고통지 기간 준수 등

## ■ 저임금 미니고용자 변동 현황

### 독일 전체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독일 광부·철도원·선원 연금보험공단 산하 미니잡 중앙센터(Minijob-Zentrale, www.minijob-zentrale.de)의 2011년 2/4분기 최신 소규모 저임금 미니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sup>16)</sup> 2011년 6월 말에 독일 전체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는 총 6,941,11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1년 1/4분기인 3월 말보다 약 154,519명(+2.3%)이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2/4분기에 비해 140,545명(+2.1%)이 증가한 것이다 (표 2 참조).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에 남성인 미니고용자 수는 2,628,863명(남성 비율: 38.7%)으로 1/4분기에 비해 71,862명(+2.8%)이 증가하였으며,

15) Foest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2009, p. 24; Vieker,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05. 2011,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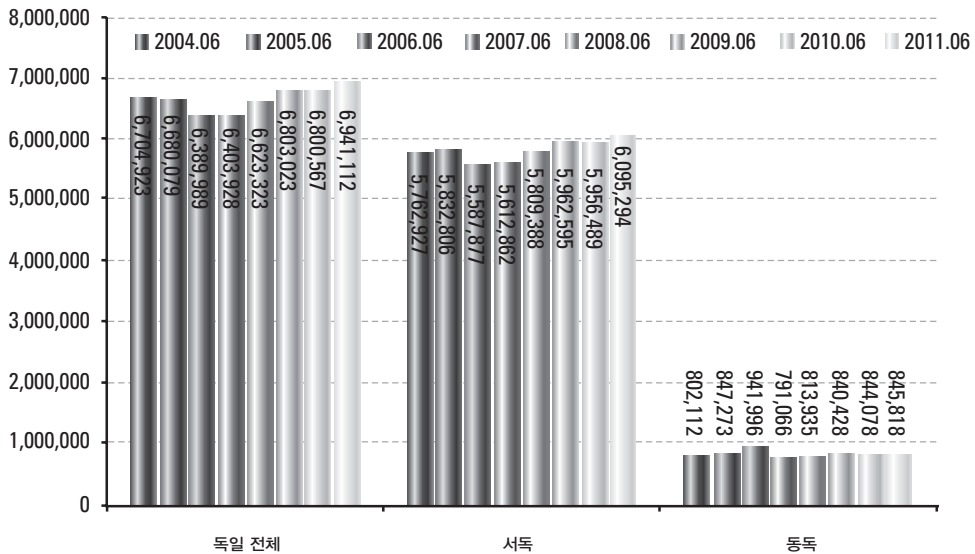
16)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표 2〉 독일 전체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연 월	전 체	남 성	여 성	독일 국적	외국인
독일 전체	2011. 06	6,941,112	2,628,863	4,312,249	6,232,815	708,297
	2010. 06	6,800,567	2,531,500	4,269,067	6,124,077	676,490
	2009. 06	6,803,023	2,501,673	4,301,350	6,131,642	671,381
	2008. 06	6,623,323	2,415,978	4,207,345	5,976,898	646,425
	2007. 06	6,403,928	2,311,045	4,092,883	5,772,000	631,928
	2006. 06	6,389,989	2,309,244	4,080,745	5,733,761	656,228
	2005. 06	6,680,079	2,432,066	4,248,013	5,947,262	732,812
	2004. 06	6,704,923	2,421,931	4,282,992	5,944,115	760,808
	2010년 대비증감	140,545(2.1%)	97,363(3.8%)	43,182(1.0%)	108,738(1.8%)	31,807(4.7%)
서독지역	2011. 06	6,095,294	2,268,446	3,826,848	5,434,128	661,166
	2010. 06	5,956,489	2,174,708	3,781,781	5,324,794	631,695
	2009. 06	5,962,595	2,148,192	3,814,403	5,334,455	628,140
	2008. 06	5,809,388	2,078,817	3,730,571	5,202,315	607,073
	2007. 06	5,612,862	1,984,438	3,628,424	5,018,884	593,978
	2006. 06	5,587,877	1,972,550	3,615,327	4,971,756	616,121
	2005. 06	5,832,806	2,069,528	3,763,278	5,146,656	686,150
	2004. 06	5,762,927	2,015,905	3,747,022	5,058,177	704,750
	2010년 대비증감	138,805(2.3%)	93,738(4.3%)	45,067(1.2%)	109,334(2.1%)	29,471(4.7%)
동독지역	2011. 06	845,818	360,417	485,401	798,687	47,131
	2010. 06	844,078	356,792	487,286	799,283	44,795
	2009. 06	840,428	353,481	486,947	797,187	43,241
	2008. 06	813,935	337,161	476,774	774,583	39,352
	2007. 06	791,066	326,607	464,459	753,116	37,950
	2006. 06	802,112	336,694	465,418	762,005	40,107
	2005. 06	847,273	362,538	484,735	800,611	46,662
	2004. 06	941,996	406,026	535,970	885,938	56,058
	2010년 대비증감	1,740(0.2%)	3,625(1.0%)	-1,885(-0.4%)	-596(-0.1%)	2,336(5.2%)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년도.

[그림 3] 연도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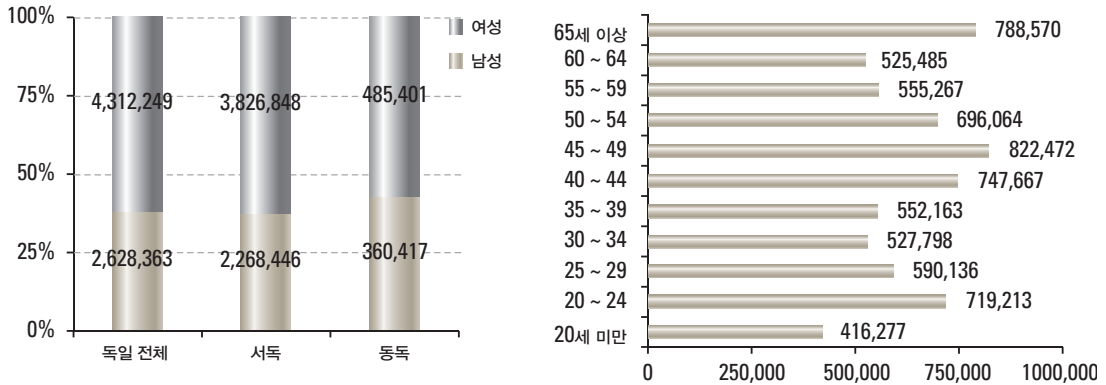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전년도인 2010년 2/4분기에 비해 97,363(+3.8%)명이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인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4,312,249명(여성 비율: 61.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4분기에 비해 82,657(+2.0%)명이 그리고 전년 대비 43,182(+1.0%)명이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근로자 현황을 동서독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2/4분기 서독 지역의 저임금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6,095,294명으로 1/4분기에 비해 143,446명(+2.4%) 그리고 전년 대비 138,805명(+2.3%)이 증가하였다. 한편 동독 지역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845,818명으로 1/4분기에 비해 단지 11,073명(+1.3%) 그리고 전년 대비 1,740명(+0.2%)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서독 지역에서 주로 미니고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독 지역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니고용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5~49세 그룹으로 전체 822,472명이었으며, 20세 미만 연령층은 416,227명으로 집계되어 미니고용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세 미만 연령그룹의 경우 1/4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미니고용자 수가 67,509명(+19.4%)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림 4] 성별 및 연령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2011. 06)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p. 19~20.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26,346명(+6.8%)이 증가하였다. 또한 60~64세 연령대 그룹의 경우 전년 대비 45,170명(+9.4%)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35~39세 그룹과 40~44세 그룹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2%와 -4.0%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독일 전체 제조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 미니고용자의 89.8% 정도가 독일 국적자로 나타났으며, 2011년 2/4분기에 전체 6,232,815명(전년 대비 +1.8%)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저임금 미니고용자 수는 708,297명(전년 대비 +4.7%)으로 외국인 미니고용자의 증가율이 독일 국적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 산정된 2009년 서독 지역 미니고용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261€(2008년 대비 -1.05%)이고 동독 지역 미니고용자들의 경우 약 208€(2008년 대비 +0.62%)로 서독 지역 근

<표 3> 제조생산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독 지역	258,77	259,86	262,72	263,09	264,03	261,27
동독 지역	195,54	203,78	203,67	204,58	207,16	208,45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로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신고용자 현황

2011 6월 말(2/4 분기)에 민간가계부문(Privathaushalten)의 저임금 미신고용자 수는 전체 231,242명으로, 이는 1/4분기에 비해 9,544명(+4.3%)이 그리고 전년도 2/4분기에 비해 14,036명(+6.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신고용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2/4분기에 남성인 미신고용자 수는 19,829명(남성 비율: 8.6%)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2,104명(+11.9%) 그리고 전

〈표 4〉 독일의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고용자 현황

	연 월	전체	남 성	여 성	독일 국적	외국인
독일 전체	2011. 06	231,242	19,829	211,413	198,580	32,662
	2010. 06	217,206	18,491	198,715	187,756	29,450
	2009. 06	190,378	15,624	174,754	164,881	25,497
	2008. 06	168,548	13,206	155,342	145,682	22,866
	2007. 06	141,914	10,297	131,617	122,425	19,489
	2006. 06	123,512	8,801	114,711	106,270	17,242
	2005. 06	111,530	8,157	103,373	95,541	15,989
	2004. 06	67,401	4,351	63,050	58,462	8,939
	2010년 대비증감	14,036(6.5%)	1,338(7.2%)	12,698(6.4%)	10,824(5.8%)	3,212(10.9%)
서독지역	2011. 06	210,443	17,326	193,117	179,639	30,804
	2010. 06	198,041	16,213	181,828	170,222	27,819
	2009. 06	173,985	13,771	160,214	149,949	24,036
	2008. 06	155,093	11,774	143,319	133,545	21,548
	2007. 06	130,332	9,135	121,197	112,034	18,298
	2006. 06	113,786	7,861	105,925	97,620	16,166
	2005. 06	103,129	7,339	95,790	88,085	15,044
	2004. 06	62,275	3,899	58,376	53,852	8,423
	2010년 대비증감	12,402(6.3%)	1,113(6.9%)	11,289(6.2%)	9,417(5.5%)	2,985(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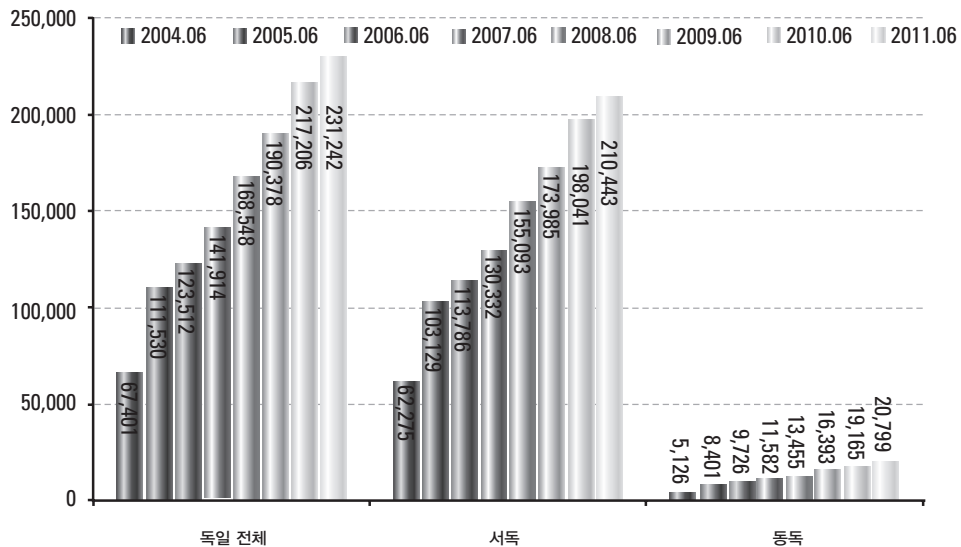
〈표 4〉의 계속

동독지역	2011. 06	20,799	2,503	18,296	18,941	1,858
	2010. 06	19,165	2,278	16,887	17,543	1,631
	2009. 06	16,393	1,853	14,540	14,932	1,461
	2008. 06	13,455	1,432	12,023	12,137	1,318
	2007. 06	11,582	1,162	10,420	10,391	1,191
	2006. 06	9,726	940	8,786	8,650	1,076
	2005. 06	8,401	818	7,583	7,456	945
	2004. 06	5,126	452	4,674	4,610	516
	2010년 대비증감	1,63(8.5%)	225(9.9%)	1,409(8.3%)	1,407(8.0%)	227(13.9%)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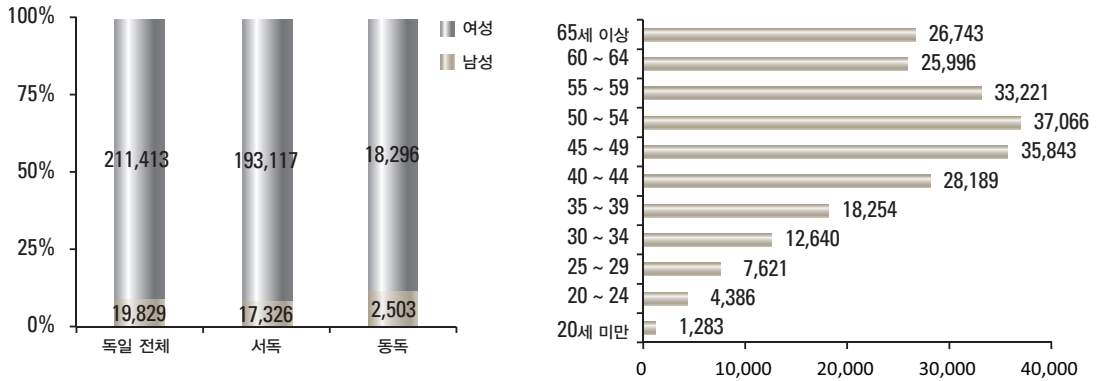
년도에 비해 1,338명(+7.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211,413명(여성 비율: 91.4%)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7,440명(+3.6%) 그리고 전년 대비 12,698명(+6.4%)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가계부문 미니고용자의 대다수가 여성 근로자인 것으로 나

〈그림 5〉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고용자 변화 추이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그림 6] 성별 및 연령별 저임금 미니고용자 현황 (2010. 06)



자료: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pp. 24~25.

타났다. 이는 민간가계부문에서 실시하는 미니고용의 대부분이 쇼핑, 청소, 육아,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 범주에 속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니고용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54세 그룹으로 전체 37,066명(전년 대비 +10.0%) 이었다. 한편, 20대 미만 연령그룹의 미니고용자 수는 1,28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1/4분기와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인 +17.0%를 나타냈다. 한편, 전년 대비 미니고용자 비율 증가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바로 60~64세 그룹으로 16.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적별 미니고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가계부문 미니고용자의 약 85.9%가 독일 국적자이고 나머지 14.1%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4분기 외국인 미니고용자 수는 전체 32,662명으로 전년 대비 +10.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인 미니고용자 수는 198,580명으로 전년 대비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09년 서독 지역 미니고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189,73€로 전년 대비 -1.25%가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독 지역 미니고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136,64€로 전년 대비 -1.62%가 감소하였다(표 5 참조).

〈표 5〉 민간가계부문 저임금 미니고용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독지역	-	-	-	192,03	192,13	189,73
동독지역	-	-	-	137,65	138,89	136,64

출처: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년도.

## ■ 미니고용을 둘러싼 최근 논의 및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독일에서 미니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민간가계부문에서 미니고용의 증가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미니고용의 장점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으로부터 면제될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의 미니고용자가 저임금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근로자가 저임금 미니고용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만한 소득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sup>17)</sup> 또한 당초에 미니고용 지원확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장기실업의 감소와 이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절감이라는 고용정책적 목표 달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니고용이 정규직 고용으로의 전환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미니고용이 주로 부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수 미니고용자 수는 2007년에 488만 명에서 2010년에 484만 명으로 -0.9%가 감소한 반면에, 부업을 목적으로 미니고용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204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13%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sup>19)</sup> 이와 같이

17) Vieker,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05. 2011, p. 4.

18) Böcklerimplus, Auf Kosten der Sozialversicherung, 13/2010.

19) Böcklerimplus, Minijobs: Zubrot ohne Perspektive, 15/2010.



추가적인 소득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미니고용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료 및 조세경감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니고용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존 급여액을 예전과 같이 다시 낮추어 수혜가능 소득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LI**

---

---

### 참고문헌

---

---

- Böcklerimplus, Auf Kosten der Sozialversicherung, 13/2010.
- Böcklerimplus, Minijobs: Zubrot ohne Perspektive, 15/2010.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02. 2010.
- Foester, Axel-Friedrich,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Sozialversicherungsrecht – Lohnsteuerrecht – Arbeitsrecht, 2009.
- IHK Berli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Mini-Jobs” und “kurzfristig Beschäftigte”, 07. 2005.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1.
-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Informationen fü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04. 2011.
- Minijob-Zentrale, Aufstockung der Rentenversicherungsbeiträge: Informationen fü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01. 2010.
- Steiner, Viktor / Wrohlich, Katharina, Minijob-Reform: Keine durchgehende Wirkung, DIW-Wochenbericht, Nr. 8 /2005.
- Vieker, Nicole, Handlungsmöglichkeite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beim Einsatz von Arbeitnehmern in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Hans-Böckler-Stiftung, 05. 2011.